

1. 개정이유

「군사법원법」상 용어 변경,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직 명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검찰관”을 “군검사”로 용어 변경

나.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에 따라 “기무”를 “방첩”으로 용어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관할기무부대장”을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하며, 같은 호 중 “기무부대의 장”을 “방첩부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검찰관”이란 보통검찰부의 검찰관을”을 ““군검사”란 보통검찰부의 군검사를”로 한다.

제3조 중 “관할기무부대장”을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한다.

제4조 중 “관할기무부대장”을 “관할방첩부대장”으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할기무부대장”을 각각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할기무부대장”을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4항 중 “관할기무부대장”을 각각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관할기무부대장”을 “관할방첩부대장”으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14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검찰관(이하 “담당검찰관”이라 한다)”을 “군검사(이하 “담당군검사”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담당검찰관”을 “담당군검사”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담당검찰관”을 각각 “담당군검사”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관할기무부대장”을 각각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검찰관의 조치 결과 통보)”를 “(군검사의 조치 결과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관할기무부대장”을 각각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관할기무부대장”을 각각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관할기무부대장”을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관할기무부대장”을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기무부대장”을 “관할방첩부대장”으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휴가 등 목적지 기무부대장의 통보)”를 “(휴가 등 목적지 방첩부대장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할기무부대장”을 “관할방첩부대장”으로, “기무부대장”을 “방첩부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무부대장”을 “방첩부대장”으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무부대장”을 “방첩부대장”으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찰관이”를 각각 “군검사가”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담당검찰관”을 “담당군검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관할기무부대”를 “관할방첩부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검찰관”을 “○○○ 보통검찰부 군검사”로, “기무부대장”을 “○○○ 방첩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판결 법원”을 각각 “판결 (군사)법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검찰관”을 “○○○ 보통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검찰관”을 “○○○ 보통검찰부 군검사”로, “기무부대장”을 “○○○ 방첩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법무실장”을 “검찰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관할기무부대장”을 “관할 방첩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담당 검찰관”을 “담당 군검사”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검찰관”을 “○○○ 보통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헌병고유번호”는 “군사경찰고유번호”로, “법무실사안번호”는 “○○○ 보통검찰부 사안번호”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검찰관”을 “○○○ 보통검찰부 군검사”로 “관할기무부대장”을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검찰관”을 “○○○ 보통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헌병대장”을 “수사단(대)장”으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담당 검찰관”을 “담당 군검사”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제41호서식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법무실장”을 각각 “검찰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검찰관”을 “○○○ 보통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중 “관할기무부대장”을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관할기무부대장”을 각각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헌병대대”를 “○ ○ ○ 수사단(대)”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헌병대대/기무부대”를“수사단(대)/방첩부대”로,
“관할기무부대장”을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관할기무부대”를 각각 “관할방첩부대”로, 같은 서식 뒤쪽 중 “관할기무부대장”을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중 “검찰관”을 “○○○ 보통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중 “담당 검찰관”을 “담당 군검사”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중 “검찰관”을 “○○○ 보통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5호서식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법무실장”을 “검찰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사“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u>검찰관</u>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조사를 말한다.	2. ----- ----- -- <u>군검사</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 <u>관할기무부대</u> ”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피보안관찰자“라 한다)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를 관할하는 <u>기무부대의 장</u> 을 말한다.	4. “ <u>관할방첩부대장</u> ”----- ----- ----- ----- ----- ----- <u>방첩부대의 장</u> -----.
5. “ <u>검찰관</u> ”이란 보통검찰부의 <u>검찰관</u> 을 말하고, “군사법경찰관리“란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 <u>군검사</u> ”란 보통검찰부의 <u>군검사</u> 를 ----- ----- ----- -----.
제3조(보안관찰) <u>관할기무부대장</u> 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매	제3조(보안관찰) <u>관할방첩부대장</u> ----- ----- -----

월 1회 이상 동태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안관찰부에 기록하
여야 한다.

제4조(동태보고) 관할기무부대장
은 3개월마다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피보안
관찰자의 주요 동태보고서를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소속 부대를 관
할하는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
① (생 략)
② 군교도소의 장은 영 제6조제
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해당 군교도소를 관할하
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송부
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
호서식의 신고서 발송부를 작성
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③ (생 략)

④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서를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의 거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
찰서장(이하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그 신고

-----.

제4조(동태보고) 관할방첩부대장

----- 군검사-----
-----.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군검사-----

-----.

③ (현행과 같음)

④ -----

서 사본 1부를 관할기무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고서 사본을 받은 관할기무부대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 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교도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군교도소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군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관할기무부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6조(출소통보)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출소통보를 받거나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기무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관할방첩부대장

관할방첩부대장

군검사

⑥

관할방첩부대장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출소통보)

관할방첩부대장

받은 관할기무부대장은 보안관
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통보받
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출소사실 신고서 등)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9
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
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
고서 사본 1부를 관할기무부대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고
서를 받은 관할기무부대장은 신
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
생통고 등) ①·② (생 략)

③ 삭 제

④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
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
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기무부대장에게 통고서 사본을
송부하거나 통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
태보고) ① 관할기무부대장은
그 관할 부대에 소속된 보안관

---- 관할방첩부대장-----

-----.

제7조(출소사실 신고서 등) ----

----- 관할방첩부대
장-----
----- 관할방첩부대장-----

-----.

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
생통고 등) ①·② (현행과 같
음)

④ -----

----- 관할
방첩부대장-----

----.

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
태보고) ① 관할방첩부대장---

찰처분대상자에게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검찰관에게 보고하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관할)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 기관의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의 협조) ① 검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비밀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할 때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군검사-----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관할) 군검사-----

-----.

-----.

제12조(조사의 협조) ① 군검사는-----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비밀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군검사와 -----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회피)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그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그 밖
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
의 공정성을 잃거나 그 공정성
에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
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사안의 인지) ① 검찰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
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를 시
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
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
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
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서를 작
성하여 검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18조(출석요구)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나 참

-----.

제14조(조사의 회피) 군검사 -----

-----.

제17조(사안의 인지) ① 군검사는

-----.

② -----

----- 군검사-----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출석요구) ① 군검사 ----

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20조(참고인의 진술)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략)

제26조(사안의 송치)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을 담당하는 검찰관(이하 “담당검찰관”이라 한다)에게 사안을 송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군검사 -----

-----.

1. ~ 5. (현행과 같음)

제20조(참고인의 진술) ① 군검사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사안의 송치) ① -----

군검사(이하 “담당군검사”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송치서류) ① ~ ④ (생략)

⑤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송치 후의 조사 등)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검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해당 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검찰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보안관찰처분 청구 등) ① 검찰관은 사안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송치서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담당군검사-----
-----.

제29조(송치 후의 조사 등) ① --

-- 담당군검사-----
---.

② -----

----- 담당군검사-----

--.

제30조(보안관찰처분 청구 등) ① 군검사는 -----

-----.

-----.

②·③ (생략)

제31조(증명자료) 검찰관은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7. (생략)

제32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① 검찰관은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이하 “기간갱신사안”이라 한다)을 처리할 때에는 관할기무부대장으로 하여금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직업, 월수입, 가정환경, 사회활동 상황, 그 밖에 기간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와 보안관찰부 등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갱신사안을 처리하는 경우 관할기무부대장으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증명자료) 군검사는 -----

----. -----

-----.

1. ~ 7. (현행과 같음)

제32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① 군검사는 -----

----- 관
할방첩부대장-----

--.

② 군검사는 -----
----- 관할
방첩부대장-----

할 수 있다.

③ 검찰관은 기간갱신사안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갱신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검찰관의 조치 결과 통보)

검찰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사안을 송치한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문서와 장부의 양식) ①

검찰관이 사안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생략)

③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

-----.

③ 군검사는 -----

---. -----

-----.

제33조(군검사의 조치 결과 통보)

군검사는 -----

-----.

제34조(문서와 장부의 양식) ①

군검사가 -----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검사와 -----

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
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
와 같다.

제35조(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
청에 관한 조사 등) ① 피보안
관찰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관
할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
장”이라 한다)은 영 제14조제1
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면제결
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 및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등
”이라 한다)를 관할기무부대장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기무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신
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
부 및 신청인의 전과 관계 등을
조사한 후 신청서등에 별지 제3
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등을 첨
부하여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기무부대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35조(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
청에 관한 조사 등) ① -----

----- 관할방첩부대장-----
-----.

② 관할방첩부대장-----

----- 군검사-----
----. ----- 관할방첩부대장-----

을 통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검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를 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7조(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 등) ① 검찰관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서를 송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 및 날짜를 관할기무부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에 따른 보안관찰

-----.

③ 군검사는 -----

-----.

④ 군검사는 -----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 등) ① 군검사는 -----

----- 관할방첩부대장-----
-----.

② -----

처분에 관한 결정서 등본의 송달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으로 부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수령서를 받고 검찰관이 직접 교부하거나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8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① (생략)

② 검찰관은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하여 갖추두어야 한다.

제39조(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등과 조사)

① 검찰관은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가족 및 신원보증인,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집행중지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 그 가족, 신원보증인, 그 밖의

----- 군검사가 -----

-----.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① (현행과 같음)

② 군검사는 -----

-----.

제39조(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등과 조사)

① 군검사는 ---

-----.

② 군검사는 -----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고지는 검찰관이 신청인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 등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0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① 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사안에 관한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관할기무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기무부대장은 신고서 1부를 복사하여 원본은 검찰관에게 보내고 사본은 보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검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④ 검찰관은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적어야 한다.

-----.

③ -----
---- 군검사가 -----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① -----

----- 관할방첩부대장-----.

② -----
-- 관할방첩부대장-----
-----군검사-----
-----.

③ -----
----- 군검사는 -----

-----.

④ 군검사는 -----

-----.

⑤ (생 략)

제41조(휴가 등 목적지 기무부대
장의 통보) ① 피보안관찰자가
휴가 또는 출장의 명을 받은 경
우 관할기무부대장은 피보안관
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
를 관할하는 기무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가 또는 출
장 사실을 통보받은 기무부대장
은 피보안관찰자의 도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기무부
대장은 피보안관찰자가 그 관할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체류하는 동안 그 동태를 관찰
하고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군검찰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휴가 등 목적지 방첩부대
장의 통보) ① -----

-- 관할방첩부대장-----

----- 방첩부대장에게 ---
-----.

② -----
----- 방첩부대장-----

군검사-----.

③ -----
----- 방첩부
대장-----

부의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43조(거소제공의 청구 등) ① 검찰관은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소제공 청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이 거소제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④ 검찰관이 영 제26조제8항에 따라 거소제공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군교도소의 장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

--- 군검사-----
--.

1. ~ 5. (현행과 같음)

제43조(거소제공의 청구 등) ① 군검사는 -----

-----.

② 군검사는 -----

-----.

③ 군검사가 -----

-----.

④ 군검사가 -----

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44조(거소변경 신청 등) ① 검찰관은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거소변경 신청서를 보내거나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거소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 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생 략)

제47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처리부는 미리 면마다 관할 검찰관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관할 검찰관의 소속 기관 또는 그 밖의 감독관청에서 내린 훈련·통첩·지시 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9호의 조사 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찰관에게 송치한 사안 송치서, 기록 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거소변경 신청 등) ① 군검사는 -----

-----.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군검사-----
-----.

③ -----
----- 군검사-----

-----.

④ -----
----- 군검사-----

-----.

⑤・⑥ (생략) ⑦ 제1항제12호의 처분 결과 통 보서철에는 <u>검찰관의</u>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청구 여부와 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통보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⑧・⑨ (생략) 제48조(서류철의 찾아보기 목록) ① (생략) ② 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경우에는 찾아보기 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u>담당검찰관</u> 또는 군사법경 찰관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u>군검사</u>----- ----- ----- -----. ⑧・⑨ (현행과 같음) 제48조(서류철의 찾아보기 목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담당군검사</u> ----- -----.
--	--